

의안번호	2212872
의 퇴 인	강선영 의원
회 답 일	2025.9.12.
추계번호	25B4981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(적용 제외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(제1항) 3. 「국가공무원법」과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, 「군인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인(입대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에 한정한다)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(제4장에 한정한다)에 가입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별정직공무원, 임기제공무원 및 군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(적용 제외)	-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- 본문 참조

2. 상세 사유

- 현행 「고용보험법」은 「국가공무원법」과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「고용보험법」을 적용하지 아니하되, 일부 별정직공무원,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
 - 개정안은 「군인사법」 제2조제1호²⁾에 따른 군인(입대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에 한함)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의 이유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
 - 첫째, 개정안은 입대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함
 - － 또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, 구직급여일액, 소정급여일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 - 둘째, 개정안은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가입대상 및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이 고용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곤란함
 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1) 제10조(적용 제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3. 「국가공무원법」과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(제4장에 한정한다)에 가입할 수 있다.

2) 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.

1.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, 준사관(準士官), 부사관(副士官) 및 병(兵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.go.kr